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시·도지사로 일원화〉

■ 서일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893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서일준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6. 17.
3. 회부연월일 : 2025. 6.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과태료 부과·징수 주체를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여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6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전기공사업 관련 위반행위(제46조제1항 및 제2항1)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서 ‘시·도지사’로 일원화하는 내용임(안 제46조제3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6조(과태료) ①·② (생략)	제46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u> 가 부과·징수한다.	③ ----- ----- <u>시</u> <u>·도지사</u> ----- -----.

1) 제46조제1항은 공사업자 등록기준 미신고, 하도급 통지 미이행, 시공관리책임자 지정 미통보, 사업자 표시 미게시 등 10개 항목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제46조제2항은 시·도지사가 공사업자에게 업무 및 시공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명하였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전기공사업법」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공사업자 또는 그 승계인
3. 제9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제12조제1항의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 도급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6.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하도급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8. 제23조를 위반하여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
9. 제24조제1항에 따른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표지판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설치하지 아니한 자
10.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② 제2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 제46조제3항은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의 주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규정하고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권한을 보유하는 이원화된 구조이나, 실제로는 모든 과태료 처분이 시·도지사에게 의해 집행되고 있음.

과태료 관련 규정

「전기공사업법」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 (등록신고 : 시·도지사)
2. 제6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공사업자 또는 그 승계인 (등록취소 : 시도지사)
3. 제9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변경신고: 시·도지사)
4. 제12조제1항의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실태조사: 시도지사)
5.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 도급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실태조사: 시도지사)
6.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하도급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실태조사: 시도지사)
7.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실태조사: 시도지사)
8. 제23조를 위반하여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 (실태조사 : 시도지사)
9. 제24조제1항에 따른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표지판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설치하지 아니한 자 (실태조사 : 시도지사)
10.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실태조사 : 시도지사)

② 제2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실태조사 : 시도지사)

주) 「전기공사업법」 상 과태료는 전기공사업의 등록·변경, 도급대장 비치, 하도급 통지, 시공관리책임자 지정, 실태조사 등과 관련된 사무에 부과

- 해당 업무는 현재 시·도지사가 모두 수행하고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징수도 모두 시·도지사가 부과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2022~2024년) 전기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과태료 부과 건수는 총 2,707건, 총액은 약 23억 3,500만원에 이르고, 모든 건이 시·도지사에 의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²⁾

시·도별 전기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

□ 조회기간 : 2022.1.1 ~ 2024.12.31 (3년)

지역	처분건수 (단위 : 건)			처분금액 (단위 : 천원)		
	'22	'23	'24	'22	'23	'24
서울	168	179	174	140,300	154,300	127,400
부산	58	57	80	41,500	37,500	48,500
대구	26	—	7	26,000	—	3,500
인천	21	36	48	20,300	32,000	39,300
광주	42	40	47	43,300	46,300	59,100
대전	1	34	35	1,000	17,700	20,000
울산	19	—	34	19,000	—	27,200
세종	11	18	15	11,000	18,000	15,000
경기	203	213	169	163,850	177,800	139,500
강원	26	49	94	28,000	59,500	108,000
충북	70	67	77	53,750	49,500	61,000
충남	83	80	4	83,000	79,000	4,000

2)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기공사업 등록, 실태조사 등 업무를 시·도지사가 수행함에 따라 실제 과태료 부과는 시·도지사만 부과중이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7년 이후 과태료 부과 이력이 없음.

「전기공사업법」 제4조(공사업의 등록) ① 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29조의2(공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 시·도지사는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하도급의 적절 여부, 성실 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목적과 관련된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지역	처분건수 (단위 : 건)			처분금액 (단위 : 천원)		
	'22	'23	'24	'22	'23	'24
전북	32	42	62	36,400	43,000	63,000
전남	13	46	28	16,000	46,000	34,500
경북	19	1	55	12,650	1,000	32,560
경남	17	39	18	15,400	29,000	13,400
제주	20	18	12	14,500	13,000	9,500
계	829	919	959	725,950	803,600	805,46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과태료 부과 사유로는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이 대부분(연간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전기공사 표지 미게시’, ‘하도급 통지의무 불이행’ 등 대체로 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들이 포함됨.

☐ 과태료 부과 사유

사유	처분건수 (단위 : 건)		
	'22	'23	'24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	812	897	954
전기공사 표지 미게시	11	-	-
하도급 통지의무 불이행	2	1	-
등록기준 지연신고	4	21	5
계	829	919	959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모든 과태료 집행이 시·도지사에게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권한은 중앙과 지방 양자에 분산되어 있어 행정책임의 불명확성, 권한 중복 등 제도적 비효율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전기공사업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실질적인 행정주체인 시·도지사로 일원화하여 법령 체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 하려는 것으로, 이는 실제 운영과 법령 체계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유사 사무에 있어 중앙정부의 관여를 최소화하려는 최근의 지방사무 정비 및 권한 명확화 기조에 부합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임.

개정안은 실무 운영과 법령 체계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비 성격의 입법으로, 현재와 같이 대부분의 과태료 처분이 시·도지사에게 의해 집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권한 주체를 법령상 일원화함으로써 실무상 혼선을 방지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보임.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공사업 등록, 실태조사 등 관련 사무를 시·도지사가 수행하고 있는 점을 들어, 개정안과 같이 전기공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 역시 시·도지사에게 일원화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461